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한 논쟁에 대해*†

김진형

최근에 홍지호와 여영서 교수는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이영철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시했다. 필자는 이영철의 논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선, 양측의 논란을 확인하고 그 실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에 비추어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 아니라는 홍지호 측 주장을 재해석할 것이다. 또한 양측이 각자 옹호하는 두 가지 기준은, 일상의 논증을 다루는 교육 현장에 적절하며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영철이 실제로 주장하고자 했던 바를 홍지호 측의 반론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홍지호 측 반론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주 제 논리학, 논리철학

주요어 부당한 연역 논증, 연역과 귀납의 구분, 이영철 교수, 홍지호 교수와 여영서 교수

* 투고일: 2019. 11. 17,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9. 12. 17, 게재 확정일: 2019. 12. 18

†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하고 비판적인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1. 들어가는 말

전공으로서 논리학이 아닌, 교양으로서 논리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논증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후, 학생들 스스로 논증을 구성하거나 타인의 논증을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때문일 것이다.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다음은 잘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논증이란 무엇인가?

연역과 귀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설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등을 정당화할 때 필요한 것이 ‘근거’라는 점을, 그리고 두 번째 설명으로는 근거로 제시된 것(들)이 어떤 경우에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에 청자(동료 학생이든, 담당 교수 내지 관련 전공자든, 아니면 예컨대 어떤 매체의 독자이든)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혹은 아주 까다롭게 하려면 어떤 근거(들)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설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논리교육은 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물음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담당 교수가 어떤 노선을 취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이해 역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물론 그 차이가 혼란이나 왜곡을 낳는 일만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개념 이해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즉 가령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다면 어떤 설명이든 그 활용을 논란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들 자신이 일상의 어떤 것이 왜 논증인지를 말할 수 있고 주어진 근거들이 주장에 실어주는 강도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일관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좋은 설명이어야 한다.

논증 개념,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는 홍지호·여영서(2019)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논증의 정의에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포함시켜야 하는 만큼, 한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여야 한다.¹⁾ 즉 어떤 논증의 전제(들)와 결론 사이에 필연적(개연적) 뒷받침 관계를 의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연역(귀납) 논증이라는 것이다. 소위 ‘의도 기준’을 옹호하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예컨대 ‘비가 온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음에 틀림없다.’와 같은 후건긍정식은 그 의도를 고려할 때 연역이되 다만 연역 규칙을 어긴다는 점에서 ‘부당한’ 논증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 아니라는 것이 홍지호 교수와 여영서 교수(이하, 홍지호 측)의 주장이다. 이것은 특히 일상의 논증을 다루는 교육 현장에서 연역과 귀납의 구분 문제에 관한, 한 가지 좋은 설명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후건긍정식 $\langle P \rightarrow Q, Q / \therefore P \rangle$ 을 ‘연역’으로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그 간단한 이유는, $P \rightarrow Q$ 와 Q 로부터 P 가 연역되도록 하는 규칙을 우리는 논리학 교재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²⁾ 말하자면 우리는 타당한 논증만을 ‘연역’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당한 연역 논증’을 형용모순으로 만드는 이러한 용어 사용은 홍지호 측에서 문제 삼은 이영철(이영철, 2016)의 바로 그것이다.

일단, 양측의 논점들과는 별도로 필자가 생각하는 논쟁의 발단은 단순하다. 우선, 일상의 논증들이 자연연역법이나 공리적 방법들을 다루는 연역논리학 교재의 논증에는 없는 독특한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이 점은 아래에서 언급될 것이다)을 이영철이 유념치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홍지호 측이 옹호하는 다음 정의(1)가 연역논리학의 논증들이 아닌 일상의 논증에 대한 것임을 감안함으로써 보다 더 면밀한 논의를 펼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1) 홍지호·여영서(2019), p. 156과 그곳의 각주 4) 참조.

2) 비유를 들면, 용광로의 황금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조’해낼 물리적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황금 ‘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1)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이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포함한다. 반면에 귀납 논증은 전체의 참이 결론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증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전체의 참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3)(밑줄, 필자 강조)

그래서 이영철에 대한 홍지호 측의 문제 제기도 사실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이영철이 옹호하는 다음 정의(2)는 일상의 논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상의 논증을 연역과 귀납으로 분류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연역 논증: 만일 전제가 모두 옳다면 결론은 반드시 옳아야 한다.

귀납 논증: 만일 전제가 모두 옳을지라도 결론은 옳음 직할 뿐이지 반드시 옳지는 않다.4)

이러한 진단에 따르면 언뜻 정의(1)은 일상의 논증에, 정의(2)는 형식논리학과 귀납논리학 교재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하고 채택하면 그만일 듯 보인다.5)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논란의 근본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 각 정의를 만족하는 논증의 범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그 차이가 인지되었더라면 적어도 홍지호 측의 반론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 차이는 인지되지 않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정의의 피정의항(definiendum)이 모두 ‘연역(귀납)’이기 때문이다.

3) 이병덕(2019), p. 19. 다른 표현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연역 논증: 만약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예외 없이/필연적으로 참이기를 목표로 하는 논증. 귀납 논증. 귀납 논증: 만약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역시 참일 개연성/확률이 높기를 목표로 하는 논증.(김동현 2019, p. 76, 밑줄은 필자의 강조)

4) 새먼(2004), p. 30. 이를 채택하는 비판적사고 관련 교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박준호·양은석(외)(2016)을 들 수 있다.

5) 두 정의의 공통점은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강도로 구분된다고 보는 데에 있다.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분류 기준은 다양하다. 이에 관해서는 박준호(2006)을 참조하기 바람.

필자는 기본적으로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이영철의 논지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것을 전제로 필자는 우선, 양측 사이 논란의 실제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에 비추어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 아니라는 홍지호 측 주장을 다시 이해할 것이다. 또한 정의(1)과 정의(2) 모두, 일상의 논증을 다루는 교육 현장에 적절하며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영철이 실제로 주장하고자 했던 바를 홍지호 측의 반론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홍지호 측 반론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2. 논증의 분류 문제

다음은 홍지호 측과 이영철의 주장이 부딪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영철은 연역 규칙을 따르는 논증만이 연역 논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연역’을 논증 분류어일 뿐만 아니라 논증 평가어로 간주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연역 논증이란 연역 규칙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의 입장대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규정한다면, ‘연역’과 ‘귀납’은 논증 분류어일 뿐 논증 평가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⁶⁾ (밑줄은 필자 강조)

여기에서 우리는 양측의 긴장이 ‘연역(演繹, deduction)’과 ‘귀납(歸納, induction)’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홍지호 측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 형용모순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서 ‘연역’이 평가어로도 간주되는 것을 배척하는 논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또 한 가지 쉽게 확인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양측이 말하는 연역 논증의 외연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즉 연역 규칙을 실제로 따르는 논증들의 모임과 연역 규칙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논증들의 모임은 당

6) 홍지호 · 여영서(2019), pp. 176-177.

연히 다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영철과 홍지호 측은 서로가 상대방이 말하는 모임을 ‘연역’의 외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는 양측의 긴장이,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모두 ‘연역’으로 부르는 데에서 발생했음을 뜻한다. 즉 주어진 용어가 오로지 ‘연역’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탓에 이영철은 정의(1)을, 그리고 홍지호 측은 정의(2)를 배척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명백히 다른 두 대상 중 하나를 두고, 그것은 나머지 것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할 리는 결코 없다. 그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의 논쟁은 사실 ‘연역’을 어느 대상의 이름으로 간주해야하는 지를 두고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방금 전 인용에 따르면, 평가어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분류어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사용이 바람직한가?

우선, 홍지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용어 ‘연역’은 분류어로만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러해야 하는가? 형용모순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옳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목적을 위해 서라면 굳이 ‘연역’이라는 용어만을 고집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연역’을 대신할 새로운 분류어를 도입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역’을 분류어로만 간주해야 하는 것은 아닌 듯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그것을 평가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영철의 논변은 그 선택지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또한 꼭 그렇게 사용해야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 ‘부당한 연역 논증’을 형용모순으로 두지 않고자 한다면 말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용어 ‘연역’을 형용모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영철과 홍지호 측 각자가 ‘연역’으로 부르는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의 인용에 따르면 홍지호 측은 연역 규칙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논증, 즉 평가하려는 논증들이다. 그리고 이영철의 대상은 연역 규칙을 실제로 따르는, 따라서 평가한 논증들 중 일부이다. 예를 들어, 정의(1)을 옹호하는 홍지호 측에 따르면 전건긍정식과 후건긍정식은 모두 ‘연역’이다. 반면에 정의(2)를 옹호하는 이영철에게는 전건긍정식, 따라

서 타당한 논증만이 ‘연역’이다.

필자는 이들 두 경우 중 후자, 즉 이영철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논변에 함축되어있듯이 예컨대 전건긍정식이 실제로 따르는 규칙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연역’ 규칙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후건긍정식이 따르는 ‘연역’ 규칙은 없다는 것이다. 더하여, 정의(1)은 정의(2)에 개념적으로 의존한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의(1)은 형식논리학이 다루지 않는, 즉 의도나 맥락을 갖기 마련인 일상의 논증을 위해 이론 영역에 있던 정의(2)를 끌어들인 데서 나온, 실천적 차원의 정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역’을 평가어로 간주하자는 이러한 선택은 당연히 형용모순 문제에 빠진다. 이를 위해 (앞서 암시했듯이) 새로운 분류어 도입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정의(1), 따라서 홍지호 측이 말하는 의도 기준에 따르면 ‘연역’은 논증 제시자(A)가 필연적 뒷받침 관계를 ‘의도’한 모든 논증들이다.⁷⁾ 그러면 예컨대 후건긍정식에 대해서는 다음이 성립한다.

논증 제시자 A는 후건긍정식이 ‘연역’ 논증이길 의도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평가를 위해 연역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적용 결과 그것은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후건긍정식은 ‘연역’이고 부당하다.

이에 따르면, ‘연역’이란 A가 논증을 의도한 것이면서 연역 규칙을 통해 결과적으로 타당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모든 논증을 지칭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본대로 이영철의 ‘연역’ 개념과 분명히 다르다. 즉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우리가 이영철의 사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 ‘연역’을 대신할 새로운 분류어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편의상 그리고 잠정적으로) ‘연역적(인)(deduction-like)’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7) 물론 이를 위해서는 A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특히 실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홍지호 교수와 여영서 교수는 이 점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옹호하였다.

부당한 ‘연역’ 논증

= df. 연역 규칙을 적용한 결과 타당하지 않음이 증명된 ‘연역적(인)’ 논증

필자는 새 용어의 도입과 그에 의거한 이 해석이 앞의 인용에 담긴 홍지호 측의 취지를 훼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이영철이 말하는 ‘연역’을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즉 실제로 연역 규칙에 따르는) 어떤 ‘연역적(인)’ 논증들의 이름으로 이해하기로 하자. 그러면 간단히 다음을 얻을 수 있다.⁸⁾

<표>

논증			
연역적(인) 논증		귀납적(인) 논증	
타당한 논증	부당한 논증	강한 논증	약한 논증
연역		귀납	

이 <표>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연역’이 아니라 단지 ‘연역적(인)’ 논증일 뿐, 이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부당한 연역적(인) 논증’은 있을지언정 이영철의 말처럼 ‘부당한 연역 논증’은 없게 된다.⁹⁾ 바뀌

8) 이 <표>와 관련,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로 이해하고 ‘연역적으로 타당한’ 그리고 ‘연역적으로 부당한’을 논증 평가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이영철 논제보다는 홍지호·여영서 논제를 지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 지적은 부당한 논증도 연역으로 부르자는 제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필자는 본문에서 ‘연역’의 그러한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이미 밝혔다. 다른 심사위원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연역’과 ‘귀납’이라는 용어는 별다른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연역’은 ‘타당한 논증’으로 대신하면 되고 ‘귀납’은 ‘강한 논증’으로 대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역적(인)’과 ‘귀납적(인)’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은 본문의 논의를 고려할 경우, 적어도 다음에 대해 합당한 답이 제시될 때 유효할 것이다. 예컨대 용어 ‘연역’은 어떤 경우에 (부당한 논증도 지칭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쓸모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왜 꼭 그 경우라야 하는가? 말하자면, 현 상황에서 합당한 답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말하면 위의 <표>는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임을 다시 확인해준다. 이제 이를 반영하면 다시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부당한 ‘연역’ 논증

= df. 연역 규칙을 적용한 결과 타당하지 않음이 증명된 ‘연역적(인)’ 논증

= df. ‘연역’이 아닌 ‘연역적(인)’ 논증

이를 고려하면 형용모순의 문제는 우리가 특히 교실에서, ‘타당하지 않은 (invalid)’ 논증을 (종종 부지불식간에) ‘연역’으로 부르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형식논리학에서 ‘후건긍정 추론’이나 ‘전건부정 추론’과 같은 부당한 논증들을 다룬다는 사실, 가령 진리표나 진리나무를 이용하여 부당함을 증명한다는 사실에서 그 논증들을 ‘연역(논증)’으로 부르곤 할 수 있다.¹⁰⁾ 하지만 이상의 논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의도 기준이 정의(1)을 옹호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해보자. 그러면 정의(1)은 연역적(인) 논증과 귀납적(인) 논증에 관한 것이지 타당한 논증과 옳은(강한) 논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의(2)가 후자에 관한 것이다.¹¹⁾ 즉 홍지호 측과 이영철이 고려한 구분 문제는 서로 다른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분류를 위한 의도 파악의 문제이다. 연역 규칙 혹은 귀납 규칙을 통해 평가하기에 적절한 논증과 그렇지 않은 논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예컨대 우리는 왜 후건긍정식에 연역 규칙을 적용하는가?

9) 이영철(2016), p. 73 참조.

10) 한 예로 부당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나아가는 단계들(deduction steps)이 부당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 수 있다. Bibel(1993), pp. 12-14 참조.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이때의 ‘deduction steps’은 ‘연역(논증)’이 아닌 ‘연역적(인)(논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식논리학 교재에서 가령 ‘다음 논증(들)이 타당하지 부당한지를 판정하라’고 하지 ‘다음 연역 논증(들)이 타당하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판정하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은 쉽게 확인된다. McKay(1989), p. 50 참조.

11) 논증의 구분 문제를 강도의 구분 문제로 보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히치콕(Hitchcock, 1979; 1980)과 고두(Goddu, 2001)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람. 거칠게 말하면 이영철의 입장은 그들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한 답은, 그것이 연역 규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일단, 후건긍정식이 외관상 후건부정식 내지 전건긍정식 등등과 닮았다는 점, 즉 조건문과 그 전건 혹은 후건에 해당하는 문장이 하나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나 논리 연결사를 갖는 문장들로 번역될 수 있으며 따라서 둘 모두 일정한 형식을 갖는다는 점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연역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후건긍정식과 타당한 어떤 논증(예컨대 후건부정식)의 유사성을 통해 A가 연역, 즉 필연적 뒷받침 관계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¹²⁾

3. 논쟁의 실상

방금 전 논의에 따르면 홍지호 측이 생각했던 연역과 귀납의 구분은 연역적(인) 논증과 귀납적(인) 논증의 구분이었던 반면, 이영철이 염두에 둔 것은 타당한 논증과 옳은(강한) 논증을 구분하는 문제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1)을 ‘분류’에 관한 정의로, 그리고 정의(2)를 ‘평가’에 관한 정의로 이해하기로 하자. 논증의 분류는 논리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즉 평가의 선행 요건임을 감안하면, 두 정의는 일상의 논증을 다루는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12) 그러한 유사성(닮음)을 연역적(인) 논증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기에 충분한 요소로 보는 것은 홍지호 측이 말하는 ‘논증 형식을 통한 의도 파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홍지호·여영서(2019), pp. 171-172 참조. 귀납적(인) 논증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필자는 논증들 사이의 닮음은 논증들을 분류하는 데 충분히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닮음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다음을 참조함. 비트겐슈타인(2006b), §67.

정의(2)+

연역 논증: 연역적(인) 논증 가운데, 연역 규칙을 실제로 따르는 논증(전제와 결론 사이에 필연적 뒷받침 관계가 성립하는 논증)

귀납 논증: 귀납적(인) 논증 가운데, 귀납 규칙을 실제로 따르는 논증(전제와 결론 사이에 개연적 뒷받침 관계가 성립하는 논증)

물론 분류가 요청되지 않는 어떤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서 정의(2)+와 정의(2)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진영 간에 있었던 충돌은 어떻게 되는가? 위의 <표>를 고려하여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홍지호 측(H): 한 논증이 연역적(인) 것인지 귀납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논리 규칙을 따르려는 ‘의도’이다.

이영철 측(L): 연역적(인) 논증이 연역(타당한 것)인지 귀납적(인) 논증이 귀납(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논리 규칙을 따르려는 ‘의도’가 아닌, ‘실제로’ 따르는가이다.

이제 아래에서는 이 해석에 비추어, 두 진영 간에 있었던 긴장과 논쟁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이영철 측 입장을 분명히 해보기로 한다.

편의상 몇 가지 쟁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이영철 측은 논증의 분류 기준이 의도여야 한다는 주장(H)을 거부하는가? 두 번째, 홍지호 측은 논증의 평가 기준은 논리 규칙 따름 여부라는 주장(L)을 반박하는가? 먼저 첫 번째 물음과 관련, 이영철의 생각을 확인해보자.

.. 그 파악된 (논증자의) 주장이나 의도는 그 논증을 어떤 종류의 논리 규칙을 적용해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을 뿐, 그것이 곧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¹³⁾(밑줄 강조는 필자)

13) 이영철(2016), p. 67.

위의 언급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연역적(인) 논증과 귀납적(인) 논증의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으로 충분히 읽히는 만큼, 이영철은 오히려 홍지호 측 주장에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표>가 작위적이지 않다는 근거이자 결국 관련된 양측의 긴장이 결보기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보기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다음을 보자.

...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실천으로서, 실제로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지, 단순히 그 규칙을 따른다고 믿거나 주장하거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논증은 논리 규칙들을 따르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따를 경우에만 논리적, 즉 연역적이거나 귀납적이 된다. 그런데 연역 규칙들을 따르는 논증은 그 전체들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논증, 즉 타당하다고 말해지는 논증이다. 그리고 귀납 규칙들을 따르는 논증은 그 전체들로부터 결론이 개연적으로 나오고, 그런 뜻에서 옳다고 말해지는 논증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규칙도 따르지 않는 논증은 연역도 귀납도 아니며, 따라서 타당하지도 옳지도 않다.¹⁴⁾ (밑줄 강조는 필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영철이 연역과 타당한 논증, 그리고 귀납과 옳은(강한) 논증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영철에게 그 용어들은 애초부터 논증 평가어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두 용어를 분류어로도 사용한다는 홍지호 측의 지적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울러 위의 <표>가 그의 생각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물음을 보자. 만일 홍지호 측이 ‘의도’를 타당한 논증과 강한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주장했다면, 정의(2)와 충돌할 것이고 결국 이영철 측 주장을 반박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의도 기준은 단지 평가할 대상의 구분에 관한 것이므로 반박은 성립할 수 없다.¹⁵⁾ 실제로도 홍지호 측

14) 이영철(2016), p. 74.

15) 물론 의도를 타당한 논증과 강한 논증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주장으로서 정당화를 요구한다. 필자는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도’를 고려한 타당한 논증을 정식화하는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의도’를 고려한 연역 규칙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한 규칙을 정식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의미의 지지 강도를

의 논변은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는 이영철의 주장, 즉 ‘의도’를 타당한 논증과 강한 논증의 구분 기준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홍지호 측의 반론은 이영철의 주장을 분류에 관한 것, 즉 정의(2)를 논리 규칙을 적용할 대상의 구분에 관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보면 이영철의 논지는 정의(1)을 타당한 논증과 강한 논증을 구분하는 것으로 오해한 결과이다. 물론 그 오해들의 원인은 (이미 지적했듯이) ‘연역’과 ‘귀납’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한 데서, 따라서 논리 규칙을 적용할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와 논리 규칙을 적용한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의 차이가 은폐되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¹⁶⁾ 어느 오해가 문제일까? 혼란 야기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말한다면, 정의(1)의 등장이 일상의 논증을 배우는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고려치 않아 논쟁을 야기한 이영철 측에 앞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듯하다. 오히려 논란에 비추어 양측의 주장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제 필자는, 특히 형용모순 문제와 관련 이영철 측 입장을 선택한 만큼, 그의 주장을 좀 더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홍지호 측이 (그 자신의 이해에 입각해) 제기했던 반론 중 일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홍지호 측의 반론 중 하나는 논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재구성이 요청될 경우, 의도 파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⁷⁾ 재구성이 평가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화용-대화론적 논증을 가져올 수 있다. 홍지호 측이 이러한 논증을 염두에 두었는지, 또는 연역 규칙과 귀납 규칙이 아닌 제3의 규칙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만일 염두에 두었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6) 이영철(이영철, 2016)의 논지는 결과적으로 “정의(1)은 평가에 관한 정의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홍지호 측(홍지호·여영서, 2019) 논지 역시 결과적으로 “정의(2)는 분류에 관한 정의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던 셈이다. 이는 양측이 사실은 논쟁할 이유가 없었음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유의미한 논쟁은, 이영철이 “정의(1)은 분류에 관한 정의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그리고 홍지호 측이 “정의(2)는 평가에 관한 정의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발생할 것이다.

17) 홍지호·여영서(2019), pp. 163-167 참조.

대상을 구체화하는 분류의 일환임을 감안할 때, 그것은 곧 정의(2)가 분류에 관한 적절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반론은 (앞의 해석에 따르면) 정의(2)는 결코 **연역적(인)** 논증과 **귀납적(인)** 논증의 정의일 수 없다는 것에 해당한다. 물론 위에서 우리는 이영철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이해한 만큼 더 다룰 것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도 그는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즉 의도를 분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만 한다. 왜 그러는가? 다음을 보자.

- (1) 비가 온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음에 틀림 없다.
- (2)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일단 <표>를 반영할 경우 이영철과 홍지호 측 모두에게 (1)은 **연역적(인)** 논증이고 (2)는 **귀납적(인)** 논증일 것이다. 물론 파악된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 분류는 달라지거나 심지어 서로 엇갈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두 논증을 얼마든지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홍지호 측이 말한 망라적 배타성 조건은 충족된다. 관건은 그 두 논증을 각각 연역과 귀납 혹은 그릇된(나쁜) 논증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가이다.

이영철 측 주장(L)에 따르면 (1)과 (2)가 연역인지 귀납인지, 즉 타당한 논증인지 옳은(강한) 논증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것은 논리 규칙에 따르는 ‘의도’가 아닌 ‘실제로 따르는지 여부’이다. 왜 그런가? 간단히 말하면, 그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과 그 의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역적(인)** 논증, 즉 필연적 뒷받침 관계를 갖는 논증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나 (적어도 이영철이 보기에) 정작 그렇지 않은 논증(1)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논증(1)은 연역이 아니다. 그렇다면 논증(2)는 어떤가?

일단 (2)를 **귀납적(인)** 논증으로 분류하자. 즉 귀납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논증이라고 하자. (2)에 적용할 귀납 규칙은 무엇인가? 가

령, 통계적 삼단 논법의 규칙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2)는 그 규칙에 따르는가? 만약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그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보면, 즉 강한 논증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면 귀납이 아니다. 물론 연역적(인) 논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모든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는 식의 정보 또한 ‘없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보면, 그것은 연역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논증(2)는 논리 규칙을 적용한 결과 어느 것에도 따르지 않는, 그릇된(혹은 나쁜) 논증이다. 따라서 평가적 효용성 조건 역시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홍지호 측은 이 평가 결과에 수긍할 것 같지 않다. 즉 논증(2)를 나쁜 논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들 대부분이 논증(2)의 전제와 결론(혹은 ‘미국 대통령임’과 ‘바둑을 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리라 보기 때문이다.¹⁸⁾ 예를 들어 그는 우리가 논증(2)를

(2i)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로 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대는 생략 부분, 즉 소위 ‘숨은 전제’를 논증자의 의도 파악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할 것이다. 홍지호 측은 정의(2)는 ‘의도’를 배제하는 만큼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2i)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다고 반박한 셈이다. 일단 홍지호 측은 이해를 존중한다면, 일견 그 반박이 옳은 듯하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좀 더 살펴보자.

18) 홍지호 · 여영서(2019), p. 164.

4. 논증의 재구성 문제

이영철에 대한 홍지호 측의 반박은 (그가 제시한 논증(2)와 나머지 몇몇 관련 사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의(2)를 옹호하는 것이 다음을 함축한다고 이해할 경우에 성립한다.

(L)* 우리는 논증 제시자가 발화했거나 지면에 명시한 액면 그대로의 논증에만 논리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즉 주어진 논증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위 ‘실현 기준’ 옹호 주장에 해당하는데, 홍지호 측의 반론과 주장 전반은 그러한 이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이해가 홍지호 측 논변의 아르키메데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¹⁹⁾ 일단, 그의 이해가 맞는지 보자. 정말로 이영철은 (의도 파악이 중요한) 논증 재구성을 거부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는 또한 자비의 원리도 거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²⁰⁾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영철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자. 만약에 그렇다면, “논증 제시자는 논증을 제시할 때, 상대방의 평가가 그 논증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와 같기를 기대한다”²¹⁾는 이영철의 입장에서는 다음을 주장해야 한다.

19) 홍지호·여영서(2019), pp. 164-165 참조. 한편,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홍지호 여영서 교수가 (L)*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필자의 논지는,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L)에 대한 홍지호 측의 반박은 (L)*를 받아들일 때 유효하며 그 증거는 그들이 제시한 반례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필자의 이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만일 오해임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지적이 언젠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만일 누군가가 재구성을 거부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장을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재구성이 필요 없는 논증으로써, 즉 자신의 인식 조건 하에서 추가할 전제가 결코 없음을 확약하는 방식, 혹은 자신의 논증은 명시된 액면 그대로이고 그것이 전부임을 밝히는 방식으로 정당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액면 그대로 타당하거나 부당함이 명백한 논증만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는 오로지 그러한 논증들만이 제시되는 일상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의 거부는 과연 받아들일만한가?

21) 이영철(2016), p. 75.

논증 제시자는 자신이 의도한 모종의 논리적 관계를 논증 평가자가 왜곡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전제도 생략함 없이 논증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확인된다. 따라서 이영철이 재구성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거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가 말한 ‘실제로 (논리)규칙에 따른다’는 진술의 의미를 살펴보자. 논증(1)과 논증(2)에 관한 위의 논의를 다시 고려하면, 그 의미는 ‘(논리)규칙을 적용한 결과 규칙에 따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런데 거기에 대상 논증을 제한하거나 특정하는 취지의 주장이 암암리에 조차라도 들어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글 전반 어디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어느 것이든 그것이 논증인 한, 예외 없이 논리 규칙의 적용 대상이어야 함은 상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논증이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논증(2i) 또한 논리 규칙의 적용 대상이며 따라서 평가 대상이 명시된 액면 그대로의 논증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영철에게 (2i)는 ‘실제로 (귀납)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서 강한 논증일 수 있다는 것이다.²³⁾ 그러

-
- 22) ‘실제로’라는 표현과 ‘실현 기준’의 ‘실현’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일 ‘의도-실현’ 관계를 엄두에 둔 용어라면 명시된 논증을 논증 제시자가 가진 의도가 모두 실현된 논증으로 간주하는 이유 등등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홍지호·여영서(2019)에 그러한 논의는 없다. 이 글 전반에서 필자가 ‘실현 기준’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23) (2)의 주어진 맥락 등등을 고려할 결과, 다음과 같은 재구성이 합당하다고 해보자.

(2x)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알파고(AlphaGo)의 바둑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자비의 원리가, 파악된 의도 이상으로 혹은 무관하게 언제나 논리 규칙에 따르도록 재구성하라는 강제가 아닌 한, 우리는 (2x)를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이영철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가령 어느 특정 귀납(연역) 규칙을 만족한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결코 귀납(연역)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

므로 정의(2)의 옹호가 (L)*를 함축한다는 홍지호 측 이해는 잘못이며 바로 그 이유에서 그 이해에 근거한 반박도 오도(誤導)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지호 측은 정의(2)에 대한 옹호를 의도 파악이 필수적인 재구성을 허용치 않는 것으로 이해한 후, 그 이해를 근거로 정의(2)는 평가할 대상을 결정하는 분류에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영철은 앞서 본대로 의도를 분류 기준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가 재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즉 그는 가령 ‘명시된 논증(2)는, 의도했던 (2i)의 실천이 되 단지 생략형일 뿐이다’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논증(2)와 같이 재구성이 필요한 일상의 논증을 모두 배제하거나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의도 기준을 분류의 기준으로 꼭 받아들여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이영철이 재구성을 용인하는 것은 이른바 ‘실현 기준’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홍지호 측 반론²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이영철 측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1)

이영철이 논증(1)을 ‘연역’이 아니라고 한 것은 명시된 액면 그대로의 논증을 대상으로 한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영철은 논증(2)를 재구성 없이 오로지 명시된 그대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영철(2016)에는 논증(2)와 같은 일상의 논증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탓에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당연할 수 있다. 그 답변을 위해 이번에는 의도 기준을 옹호하는 측을 향해 제기될 법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고려해보자.

(2)

홍지호 측의 입장에서 논증(2)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란 의도 파악을 통해

으로 이영철에게 평가의 대상은 (2), (2i), (2x) 모두라고 할 수 있다.

24) 홍지호 · 여영서(2019), pp. 166-167.

재구성한 논증(2i)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증(1)에 대한 홍지호 측의 평가 역시 그것을 재구성한 논증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물음(2)의 가능한 답변으로서는 다음이 적절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논증(1)이 비록 타당한 논증을 의도했을지라도 그것을 타당한 논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적어도 실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증의 재구성은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적어도 실천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합리적인 그러한 논증만을 대상으로 한다.²⁵⁾

이를 고려할 경우 물음(1)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논증(1)을 명시된 액면 그대로 평가한 이유는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구성의 대상조차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논증(2)는 재구성이 적어도 실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필요할 경우 재구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보았던 대로 정의(2)의 옹호는 재구성된 논증을 배제하자는, 따라서 의도 파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의(2)는 그 자체가 재구성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이영철의 주장은 어떤

25) 일반적으로 논증의 재구성은 숨은 전제와 같은 것이 생략된 그러한 논증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그 생략은 해당 논증이 그릇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구성은 언제나 타당하거나 강한 논증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를 고려하면, 논증(1)이 재구성 대상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타당한 논증임을 드러내줄 숨은 전제를 적어도 실천적으로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논증(1)을 가령 ‘후건부정식’이게끔 하는 암묵적 전제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누군가는 그 의도가 ‘후건부정식’이나 ‘전건긍정식’임을 드러내기 위해 논증(1)의 맥락을 형성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그 논증의 주변은 매우 기이한 생각들로 둘러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논증(1)은 그 특성상 재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도 기준’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는다.

논증이 분류되었다면, 명시된 그대로든 아니면 재구성된 것이든 논리 규칙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역이나 귀납으로 평가한다는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가 의도 기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의(2)에 대한 그의 옹호는 침해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의도 기준을 통한 홍지호 측의 반론은 어떤 식으로든 정의(2)를 옹호하는 이영철의 주장을 흔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재구성과 관련하여 이영철의 주장(L)의 진의를 짚어보자. 그 주장은 논리 규칙을 실제로 따르는 논증만이 타당하거나 강한 논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구성은 의도를 구체화하는 시도, 즉 실제로 따르는 논증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건적 조치이다. 그리고 자비의 원리에 따를 경우 그 조치는 성공적인 방향을 취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 결과는 많은 경우에 타당하거나 강한 논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장(L)은 그 경우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거나 오도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어떤 논증을 의도함 자체가 (홍지호 측의 주장처럼 논란 없이 파악될 수 있다고 해도)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혹은 자비의 원리에 가정된 상황이 성립하지 않을 때가 그렇다.²⁶⁾ 그 주장(L)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다. 예컨대, 한 **연역적(인)** 논증이 어떤 연역 규칙을 따르는 논증, 즉 ‘타당한 논증’으로 재구성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것이 단지 그것을 의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⁷⁾

26) 자비의 원리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가정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1) 논증 제시자(A)는 평가자 자신(S)과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논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거나 강한 논증의 결론이기를 ‘의도’한다. 이 가정들 하에서 S가 자비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유의미한 경우는 A의 인식적 상태가 다음 중 (1)과 (5)일 때라고 할 수 있다. (1) A는 논리 규칙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2) A는 논리 규칙을 이해하지만 다소 불완전하다. (3) A는 논리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4) A는 논리 규칙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5) A는 논리 규칙을 배운 적이 없지만 타당하거나 강한 논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성도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2),(3),(4)일 때 자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27) 이를 **귀납적(인)** 논증(2)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논증(2)를 (2i)로 재구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논증(2)가 단지 ‘강한 논증’을 의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귀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5. 맺는말

필자는 이 글에서 이영철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옹호하면서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홍지호 측과 이영철 사이의 논쟁은 용어 ‘연역(귀납)’의 사용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다. 둘째, 정의(1)은 논리 규칙을 통해 평가할 대상에 관한 것이고 정의(2)는 그 적용 결과에 관한 것, 따라서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강도의 두 유형에 관한 정의이다. 셋째, 정의(2)를 옹호한다고 해서 정의(1)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영철은 정의(1)에 의거한 의도 기준을 받아들인다. 넷째, 정의(2)에 대한 홍지호 측의 반론은 평가에 관한 정의(2)를 오히려 분류에 관한 정의로 잘못 이해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오도된 것이다.²⁸⁾

전체적으로, 정의(1)과 정의(2)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기로 하자. 정의(2)를 옹호한다는 것은 ‘연역’과 ‘귀납’을 평가어로 사용함을 뜻한다. 그런데 정의(2)를 적용하려면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1)은 바로 그 분류의 지침을 제안한다. 물론 분류의 기준으로서 ‘의도’를 제안한 것이 최선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교육적 차원에서 정의(1)은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의(1)을 옹호한다고 해서 정의(2)를 배척한다거나 그 반대를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물론 평가를 위해 의도를 고려하는 경우, 즉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정의(2)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는다. 정의(1)은 정의(2)의 대척점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의(1)은 앞서 보았듯이 연역적(인) 논증과 귀납적(인) 논증의 정의, 즉 분류에 관한 정의로서 정의(2)의 적용 대상을 특정하며 따라서 부수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정의(1)이 비형식 논리학이나 비판적 사고 교과에 적절하고도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며 또한 정의(2)를 옹호하

28) 물론 이영철의 논변은 정의(1)을 타당한 것과 강한 논증의 구분에 관한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오도된 것이다. 본문에서 필자는 양측의 오해는 두 정의의 차이가 ‘연역(귀납)’이라는 한 가지 용어에 의해 은폐되었음에도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는 측의 주장을 이해하는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만일 누군가(H-)가 의도 여부를 타당한 논증과 강한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주장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앞서 본 후건부정식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L-)가 의도 여부는 논리 규칙을 적용할 대상, 즉 **연역적(인)** 논증과 **귀납적(인)** 논증을 구분을 기준일 수 없음을 주장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특히 재구성이 필요한 논증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논리 규칙을 적용할 대상을 스스로 좁힘으로써 아예 평가조차 할 수 없는 논증을 양산할 것이다. 아니면 일상의 모든 논증을 재구성이 필요치 않게끔 구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상당히 경직시키거나 표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데 H-와 L-의 주장 모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선택은 정의(1)과 정의(2)를 함께 승인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현 (2019) 『논리적 사고(2판)』, 한울출판사.
- 박준호 (2006) “논증의 종류와 평가의 기준: 비판적 사고와 비형식 논리학의 의의”, 『범한철학』, 제42집, pp. 273-296.
- 박준호·양은석(외) (2016) 『사고와 토론』,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비트겐슈타인 (2006)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책세상.
- 새먼 (2004) 『논리학』, 광강제 옮김, 박영사.
- 이병덕 (2019) 『논리적 추론과 증명(3판)』, 이제이북스.
- 이영철 (2016)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철학연구』, 115집, pp. 55-79.
- 하크 (1984) 『논리철학』, 김효명 옮김, 종로서적.
- 홍지호·여영서 (2019)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인가?”, 『논리연구』, 제22집, pp. 151-182.
- Bibel, W. (1993) *Deduction: Automated Logic*, Academic Press, Harcourt Brace & Company.
- Hitchcock, D. (1979) “Deductive and Inductive: Types of Validity, Not Types of Arguments”, *Informal Logic*, 2, pp. 9-10.
- _____. (1980) “Deduction, Induction and Conduction”, *Informal Logic*, 3, pp. 7-15.
- Goddu, G. C. (2001)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 *Informal Logic*, 22, pp. 1-17.
- McKay, T. J. (1989) *Modern Formal Logic*,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E-mail: musoyu108@daum.net

Discussion**On Debates of the Criteria of Deduction/Induction
Distinction**

Jin Hyeong Kim

In their 2019 paper, Jiho Hong and Yeongseo Yeo examined and criticized the Youngchul Lee's study on the criteria of argument classification. In this paper, I first suggest an alternative way of solving the distinction problem by examining not only Lee's claim but also Hong and Yeo's criticism. Second, based on it, I reinterpret Hong and Yeo's thesis that 'invalid deductive argument' is not an Oxymoron, and also show that both alleged criteria can be effective in teaching and learning natural language arguments. Finally, I clarify Lee's view by way of explaining why Hong's criticism is not correct.

[Subject] Logic, Philosophy of Logic

[Keywords] invalid deductive argument, deduction/induction distinction, Youngchul Lee, Jiho Hong and Yeongseo Yeo